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4-44

제출년월일: 2024. 3. 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·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처분하고자 일부개정함

#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공유재산법 규정 불부합 조문 정비(안 제3조의2제2항제4호)

- 토지보상법에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의제규정이 없음 ⇒ 삭제

※조례 입법 경제성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 반복 기재 불요

# 나. 조문 나열 순서 오기 정정(안제10조제5항제1호가목)

- 가목 두 번 중복 기재 ⇒ 가·나 순차 구분하여 반영
- 다.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및 제81조(변상금) 개정사항 반영 <개정 2023. 8. 22.>
  -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금액별 상이 ⇒ 연12회 이내로 통일(안 제31조)
  -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만원 ⇒ 50만원(안 제88조제1항제2호)

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2. 29. ~ 2024. 3. 2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4.3.2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5항제1호 각 목 중 두 번째 "가"목을 "나"목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"를 "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"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 제88조제1항제2호 중 "100만원"을 "50만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심의회의 기능) ① (생 략)	제3조의2(심의회의 기능) ① (현
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	<u>&lt;삭 제&gt;</u>
두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	
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	
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	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~ ③	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삭 제	
⑤ 법 제10조의2제4항과 영 제7조	5
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	
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	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	1
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<u>가</u> . (생 략)	<u>나</u> . (현행 두 번째 "가"목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① (생 략)	제31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①
	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<u>대부료가</u>	② <u>연간 대부료가</u>

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벤처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삭 제
- 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|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- 3. 2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-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「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50만원 이하 :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
  - 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  - 3. 1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
제88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 | 제88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--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삭 제
- 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년 2. 50만원 -----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- 3. 4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
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# 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공유재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재무과 한현진
연 락 처	02-3153-8605